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류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3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인, 암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밸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의 총수량)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6. 물가 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제7조(일반적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 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광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호 단서 ·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및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다. 물가 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2. 건물의 3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 · 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 · 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

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4.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 가. 간판의 세로크기는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내여야 한다.
 - 나.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서 옥상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만 제13조제2호 단서에 따라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5.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0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만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그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류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6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0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둘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1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이 10미터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 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 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앞쪽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 3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옥상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은 50미터의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고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계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영 제15조제1호 가목·제3호·제4호·제6호 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불링판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영 제15조제6호 나목2)·3),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그 건물부지 안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 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제3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 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

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의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가 7개 이상으로서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 · 규격 · 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 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영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시 삼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시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7호제1호 라 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지상변압기함
4. 공공자전거보관대

제16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계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 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의 게시시설(지정계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그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단일형은 1개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계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빙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다)여야 한다.
 -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빙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이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

한다.

5. 제4호에 불구하고 시장은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4층이상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불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와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8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9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20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내여야 한다.
3. 아치의 기둥 크기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 다.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2조(현수막 지정개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개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개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개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개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24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2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 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7. 도로(일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제27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시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시장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3. 은행

제2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3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3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7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3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3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3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이 행정제금)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 행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4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4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 시기, 위탁받을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4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43조제5항의 교육이수내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43조제2항·제6항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45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등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써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때

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4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행정제금 부과기준(제41조)

광고물 등	이 행정제금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m^2$ 미만		
- $2.0m^2$ 이하	20만원	
- $2.1m^2$ 이상 $3.0m^2$ 이하	30만원	
- $3.1m^2$ 이상 $4.0m^2$ 이하	40만원	
- $4.1m^2$ 이상 $5.0m^2$ 미만	45만원	
2) 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 $5.0m^2$ 이상 $6.0m^2$ 이하	55만원	
- $6.1m^2$ 이상 $7.0m^2$ 이하	65만원	
- $7.1m^2$ 이상 $8.0m^2$ 이하	75만원	
- $8.1m^2$ 이상 $9.0m^2$ 이하	85만원	
- $9.1m^2$ 이상 $10.0m^2$ 미만	95만원	
3) 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 $10.0m^2$ 이상 $12.0m^2$ 이하	110만원	
- $12.1m^2$ 이상 $14.0m^2$ 이하	130만원	
- $14.1m^2$ 이상 $16.0m^2$ 이하	145만원	
- $16.1m^2$ 이상 $18.0m^2$ 이하	165만원	
- $18.1m^2$ 이상 $20.0m^2$ 미만	185만원	
4) 면적 $20m^2$ 이상	200만원+면적 $20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m^2$ 미만		
- $2.0m^2$ 이하	20만원	
- $2.1m^2$ 이상 $3.0m^2$ 이하	30만원	
- $3.1m^2$ 이상 $4.0m^2$ 이하	40만원	
- $4.1m^2$ 이상 $5.0m^2$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 $5.0m^2$ 이상 $6.0m^2$ 이하	55만원	

- 6.1m ² 이상 7.0m ² 이하	65만원
- 7.1m ² 이상 8.0m ² 이하	75만원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85만원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 10.0m ² 이상 12.0m ² 이하	110만원
- 12.1m ² 이상 14.0m ² 이하	130만원
- 14.1m ² 이상 16.0m ² 이하	150만원
- 16.1m ² 이상 18.0m ² 이하	170만원
- 18.1m ² 이상 20.0m 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m ² 이상	200만원+연면적 2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m ² 미만	
- 0.5m ² 이하	30만원
- 0.6m ² 이상 1.0m ² 이하	35만원
- 1.1m ² 이상 2.0m ² 이하	40만원
- 2.1m ² 이상 3.0m 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 3.0m ² 이상 3.5m ² 이하	55만원
- 3.6m ² 이상 4.0m ² 이하	65만원
- 4.1m ² 이상 4.5m ² 이하	80만원
- 4.6m ² 이상 5.0m 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110만원
- 6.1m ² 이상 7.0m ² 이하	130만원
- 7.1m ² 이상 8.0m ² 이하	150만원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170만원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10m ² 이상	200만원+연면적 2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m ² 미만	
- 2.0m ² 이하	30만원
- 2.1m ² 이상 3.0m ² 이하	35만원
- 3.1m ² 이상 4.0m ² 이하	40만원
- 4.1m ² 이상 5.0m ²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55만원
- 6.1m ² 이상 7.0m ² 이하	65만원
- 7.1m ² 이상 8.0m ² 이하	75만원
- 8.1m ² 이상 9.0m ² 이하	85만원
- 9.1m ² 이상 10.0m ²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m ² 이상 20m ² 미만	
- 10.1m ² 이상 12.0m ² 이하	110만원
- 12.1m ² 이상 14.0m ² 이하	130만원
- 14.1m ² 이상 16.0m ² 이하	150만원
- 16.1m ² 이상 18.0m ² 이하	170만원
- 18.1m ² 이상 20.0m ²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m ² 이상 50m ² 미만	
- 20.0m ² 이상 25.0m ² 이하	210만원
- 21.1m ² 이상 30.0m ² 이하	230만원
- 30.1m ² 이상 35.0m ² 이하	245만원
- 35.1m ² 이상 40.0m ² 이하	260만원
- 40.1m ² 이상 45.0m ² 이하	280만원
- 45.1m ² 이상 50.0m ²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m ²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m ² 이하	30만원

	- 연면적 6m ² 이상 10m ² 이하 - 연면적 11m ² 이상 15m ² 이하 - 연면적 15m ² 이상 20m ² 이하 - 연면적 21m ² 이상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 예보탑	- 연면적 5m ² 이하 - 연면적 6m ² 이상 10m ² 이하 - 연면적 11m ² 이상 15m ² 이하 - 연면적 15m ² 이상 20m ² 이하 - 연면적 21m ²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m ²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 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 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의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 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m^2$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m^2$ 이상	150만원+연면적 $11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2$ 미만		
- $1.0m^2$ 이하	10만원	
- $1.1m^2$ 이상 $2.0m^2$ 이하	20만원	
- $2.1m^2$ 이상 $3.0m^2$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m^2$ 이상 $5m^2$ 미만		
- $3.0m^2$ 이상 $4.0m^2$ 이하	35만원	
- $4.1m^2$ 이상 $5.0m^2$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m^2$ 이상	50만원+연면적 $5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 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43조 제1항 관련)

종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m ² 이하	3,000원	
- 면적 6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m ² 이하	30,000원	
- 면적 6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m ² 이하	2,000원	
- 면적 6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m ² 이하	15,000원	
- 연면적 6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 지등(개당)	4,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m ² 이하	35,000원	
- 연면적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자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m ² 이하	15,000원	
- 연면적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 ² 이하	3,000원
- 연면적 1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 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 하는 금액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m ² 이하	3,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개시시설	
- 10m ² 이하	7,000원
- 10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하. 벽보(1건)	3,000원
거. 전단(1건)	3,0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종류의 광고 물 수수료의 2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 ·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적용

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섬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m ² 이하	3,000원
- 연면적 1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면적 6m² 이하 - 원면적 6m² 초과 20m² 이하 - 원면적 20m² 초과시 1m²당 더 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 이 1m ²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5m² 이하 - 연면적 3.5m² 초과 10m² 이하 - 연면적 10m² 초과시 1m²당 더 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면적 50m² 이하 - 원면적 50m² 초과 70m² 이하 - 원면적 70m² 초과시 1m²당 더 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면적 10m² 이하 - 원면적 10m² 초과 20m² 이하 - 원면적 20m² 초과시 1m²당 더 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나의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30m² 이상 40m² 이하 - 연면적 40m² 초과시 1m²당 더 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46조 제1항 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4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6㎡ 이상 0.8㎡ 이하		22만원	
- 0.9㎡ 이상 1.0㎡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4㎡ 이상 1.6㎡ 이하		50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0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m ² 이상 3m ² 미만		
- 2.0m ² 이상 2.3m ² 이하	58만원	
- 2.4m ² 이상 2.6m ² 이하	67만원	
- 2.7m ² 이상 3.0m ²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m ² 이상	80만원+연면적 3m ² 초과하는 면적의 0.5 m ²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m ² 미만		
- 1.0m ² 이하	8만원	
- 1.1m ² 이상 2.0m ² 이하	12만원	
- 2.1m ² 이상 3.0m ² 미만	14만원	
나) 면적 3m ² 이상 5m ² 미만		
- 3.0m ² 이상 3.7m ² 이하	22만원	
- 3.8m ² 이상 4.4m ² 이하	25만원	
- 4.5m ² 이상 5.0m ² 미만	32만원	
다) 면적 5m ² 이상 10m ² 미만		
- 5.0m ² 이상 6.0m ² 이하	42만원	
- 6.1m ² 이상 8.0m ² 이하	58만원	
- 8.1m ² 이상 10.0m ²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m ² 이상	80만원+연면적 10m ² 초과하는 면적의 1m ²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 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 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 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별지 제2호서식]



- 현수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 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사진 (3.5×4.5)	
세종특별자치시	

< 뒤 쪽 >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input type="checkbox"/> 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임)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령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천근, 맹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절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문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충돌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봄트·리벳·너트 등의 손상, 마모 등	
전기설비	구성자재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며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배선상태 : 적절용량, 과원,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통행	매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작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우, 썩무·축실 후, 폭발 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소 일 자	③ 신 청자	④ 업 소	⑤ 주 소	⑥ 광고 물 등 허가 인자 (허가 번호)	⑦ 광고 물 등 의 종류	⑧ 표시 의 우 치	⑨ 광고물 등 규격 또는 장소	⑩ 검 사 일자	⑪ 검 사 일자	⑫ 검 사 결 과	⑬ 소 속	⑭ 지	⑮ 신 청자	⑯ 신 청
-----------	-------------	--------	-------	-------	------------------------	---------------	------------	------------------	----------	----------	-----------	-------	-----	--------	-------

35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인 력 부	② 광 고 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여 월 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보 장 소 ·위 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	----------------------------	-----------------------	-------------	----------------------------	-----------------------	----------------------------------	----------------------	-------------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반환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광고물등을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 ○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⑦ 주	⑧ 종	⑨ 수	
③ 허가신고번호	⑥ 전화번호	⑩ 종류	⑪ 규격	
② 관리번호	⑤ 소명	⑨ 수량	⑩ 단위	
① 관리부서	④ 일자	⑧ 종류	⑫ 내용	

364x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직인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후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인반용지 60g/m²(재활용 бумаг)]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직인

[별지 제16호서식]

광고물 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45조제3항 관련)



-
-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2. 표시내용 : '2012'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급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예산법무담당관
2. 시의회 의원,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옥외광고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서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세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 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 관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 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

(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설되었거나 훼손.망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 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부서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 중개업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② 중개수수료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불한다.

제3조(실비)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약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주택의 중개수수료

구 분	거래금액	요 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0천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0천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
임대차 등	6억원 이상	1천분의 9 이내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이내	-
	3억원 이상	1천분의 8 이내	-

[비고]

-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수수료 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5인 이상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

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